

Soroptimist International
of the Americas
1709 Spruce Street
Philadelphia, PA 19103-6103



215 893 9000 전화
215 893 5200 팩스
siahq@soroptimist.org E-MAIL
www.soroptimist.org
웹사이트 주소

Soroptimist International of the Americas 정관

목차

이름, 목적 및 권한 부여 조항.....	2
서비스 프로그램.....	2
조직 구조.....	3
회원 클럽.....	3
회원의 자격 및 권리.....	4
총재단 원탁 회의.....	5
이사회.....	6
임원; 집행 위원장.....	10
통보; 통보 수신 포기; 회의.....	11
이사들의 개인적 책임 한계; 이사, 임원 및 기타 승인된 대표들에 대한 손해 배상.....	12
회계 관련 사안들.....	13
의회의 권한.....	15
개정.....	15
인감 및 문장.....	16

정관
SOROPTIMIST INTERNATIONAL OF THE AMERICAS, INC.
(펜실베니아 소재 비영리 단체)

The Soroptimist Foundation (차후 “연맹”이라고 칭함)이란 이름으로 기존에 알려진 Soroptimist International of the Americas, Inc. 의 본 정관은 2002년 9월 11일에 채택되었고 2006년 12월 우편 투표로 개정된 바, 개정된 정관은 이전 및 현존하는 연맹의 모든 정관을 대신한다.

제 I 조
이름

1.01 국제 소롭티미스트. 미주 국제 소롭티미스트(SIA)는 국제 소롭티미스트 (SI) 이 지정한 연맹들 중의 하나로서, 그 지리적 범위는 국제 소롭티미스트 이사회가 때때로 결정한다.

1.02 등록 마크 (Registered Marks). 연맹은 연맹의 명칭과 마크 등록을 확인하고 허가되지 않은 상업적 재판매 또는 비 상업적인 목적의 사용으로부터 보호한다.

제 II 조
목적 및 권한 부여 조항

2.01 목적. 연맹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국제 소롭티미스트 헌장에 정의된 소롭티미스트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의 목표를 증진한다 ;
- (b) 지역 사회 및 전세계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2.02 취지. 본 정관은 본질적으로 수권 (授權)의 성격을 지닌 바, 회원 클럽과 이사회에 최고의 권위와 직권을 부여한다.

2.03 해석. 본 정관은 제한적 혹은 금지적 방식이 아닌 공정하고, 광범위하며 자유로운 방식으로, 또한 국제 소롭티미스트과 펜실베니아 주 법과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2.04 범위. 연맹, 리전 및 클럽들은 본 정관과 본 정관을 통해 승인받은 연맹 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절차에 의해 운영된다.

제 III 조 조직 구조

3.01 연맹. 연맹의 회원 자격은 연맹의 지리적 경계내 혹은 연맹과 관련된 모든 지역 내에 설립된 모든 클럽에 주어진다.

3.02 리전. 연맹은 지리적으로 여러 개의 리전으로 나뉘며, 리전의 지리적 경계 내에 설립된 모든 클럽에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각 리전의 클럽들은 리전의 정관에 따라 거버너와 기타 임원들을 선출하며 선출된 거버너와 임원들은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IV 조 회원 클럽

4.01 일반 사항. 클럽 형성의 자격은 국제 소롭티미스트 과 연맹 이사회의 규정에 따른다. 각 클럽은 지역 내 직업을 다양하게 대표할 수 있는 회원 자격 종류를 결정한다.

4.02 권리. 양호 클럽은,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본 정관 혹은 다음을 포함한 1988 펜실베니아 비영리 단체법에 의해 상정되거나 회원의 투표를 요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 (a) 제 VIII 조에 따라 이사회 회원을 선출;
- (b) 제 VI 조에 따라 지정된 차기 회장의 선출;
- (c) 연맹의 내규 개정;
- (d) 연맹의 이 정관 개정;
- (e) 국제 소롭티미스트 절차에 따라 국제 회장 선출; 그리고
- (f) 제 IX 조에 따라 기금조성위원회 회원을 선출.

4.03 양호 클럽. 이사회가 설립한 정관, 규정 및 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클럽은 양호 클럽으로 간주한다.

제 V 조 회원 자격

5.01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종류 및 정의는 의 종류 및 정의는 국제 소롭티미스트이 정의한 바에 따른다: (SI 헌장 제 IV 조, 제 2 항 참조)

- (a) 정회원은 전문직 혹은 사업을 운영하거나 임원 및 관리직 혹은 이와 유사한 지위 및 책임을 지니는 직업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전문직 혹은 사업을 운영하거나 위에 언급한 관리직에 종사하는 정회원은 “분류” 코드에 따라 분류된다. 분류 코드는 회사, 기업, 정부 기관 혹은 정회원이 관련된 조직의 주요 활동에 따라 설정된다.
- (b) 퇴직/비고용 회원은 퇴직자나 임시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회원들을 일컫는다. 이 회원들에게는 따로 분류 코드가 배정되지 않는다.
- (c) 착수 회원은 현재 전문직, 사업 운영 혹은 관리직을 위한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이러한 직종에서 일을 시작하는 회원들을 일컫는다. 이 회원들에게는 따로 분류 코드가 배정되지 않는다.
- (d) 평생 회원. 1999 정관에 설명된 “활동적인 삶” 혹은 “퇴직한 삶” 분류의 정의를 충족하고 2001년 7월 1일 이전에 연맹에 의해 이와 같이 지정된 사람들은, 원할 경우, 평생 회원권을 유지할 수 있다.

5.02 회원의 권리.

- (a) 클럽의 정관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키는 참여를 한 회원은 누구든지 직책을 맡을 수 있으며, 발언, 발의 및 투표를 할 수 있다. 클럽은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회의 참석을 의무화할 수 없다.
- (b) 정회원 중 양호한 회원만이 연맹 혹은 리전의 임원직 혹은 연맹 혹은 리전의 이사회 회원에 선출 혹은 해당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
- (c) 회원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양호 회원은 모두 총회, 회의 혹은 지구 회의에서 대의원 혹은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 (d) 각 회원은 소롭티미스트 조직내에서 한 개를 초과하여 선출된 직책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선출된 직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의원; 연맹 총회 대의원; 리전 회의 혹은 지구 회의의 대의원; 국제 소롭티미스트 이사회의 리전 대의원; 국제 소롭티미스트, 연맹, 리전 혹은 클럽을 위한 자문역, 담당자 혹은 위원회 회장 혹은 위원 (후보 지명 위원회 포함).

- (e) 각 회원은 한 개의 소로티미스트 클럽에만 소속될 수 있다. 다른 클럽으로 회원권을 이전하는 경우, 새 클럽은 이전 클럽으로부터 해당 회원의 회비가 완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 확인증을 받은 후 이 회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제 VI 조 임원; 집행 위원장

6.01 자격 요건 및 직함. 연맹의 임원들은 회장, 차기 회장 및 서기이다. 한 사람이 한 개 이상의 직책을 가질 수는 없다. 임원들은 연맹의 이사들이어야 한다.

6.02 선출 및 임기. 매년 당해 회계연도 이사회 이사들이 선출되고 난 후 9월 1일 이전에, 회장은 자신과 차기 회장을 제외하고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이사직을 수행할 차기 이사회 이사들과 같은 날 퇴임하는 전년도 이사들 모두에게 차기 회장직에 입후보할 것을 추천한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지정된 날짜까지 회신해야 하며 양호 클럽들이 우편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인원의 과반수를 획득한 사람이 다가오는 회계 연도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다.

매년 새로 구성된 이사회 첫 번째 모임에서, 이사회는 회장, 차기 회장 혹은 서기의 직책을 맡지 않은 이사회 이사들 중 한 명을 서기로 선출한다. 회장이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이사들에게 요청하고 투표로 선출한다. 투표 인원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서기로 선출된다. 각 임원은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리고 후임자가 선출되고 자격을 갖추게 될 때까지, 혹은 직책 수행이 불가능해질때까지 임원직을 수행한다.

6.03 회장.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 역할을 하며 연맹의 전반적인 활동 및 운영을 지휘하지만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회장직을 맡기 위해서는, 직전해 혹은 직전해의 일부 동안 차기 회장으로 역임했어야 한다. 회장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이사회 모든 회의 및 총회를 주재하고 총회에서 직전해 회장과 회장직을 공동 수행;
- (b) 본 정관에 달리 제정되지 않는 한 모든 위원회를 임명;
- (c) 이사회가 전략적 기획, 연맹의 미션을 보충할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정책의 평가 접수 등을 수행하도록 감독;

- (d) 이사회가 승인한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들이 집행 위원장을 통해 수행되고 이사회에 의해 평가받도록 지시;
- (e)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와의 협의하에 총회를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 (f) 이사회와 연맹의 활동에 대한 정규 보고서가 클럽과 회원들에게 전달되도록 지시;
- (g) 이사회에 다른 이사들의 승인을 얻어 국제 소롭티미스트 위원회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연맹으로부터 추천함;
- (h) 모든 위원회의 위원으로 겸무; 그리고
- (i) 회장직과 관련된 다른 의무 및 이사회가 지정한 기타 의무를 수행.

6.04 차기 회장. 차기 회장은 회장의 부재 시 이사회에 모든 회의와 총회에 참석하며 회장의 의무를 수행하고 이사회 혹은 회장이 때때로 지정한 다른 의무들을 수행한다.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차기 회장은 자동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또한, 차기 회장의 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 (a) 회장직 수행을 위한 준비;
- (b) 모든 위원회의 위원으로 겸무; 그리고
- (c) 회장의 지도 하에 회장과 긴밀하게 업무를 진행하며, 최대한 회장을 지원함.

6.05 서기. 서기는 이사회에 모든 회의와 총회에 참석하고 모든 행동 계획을 기록한다. 서기의 의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이사회 회의 및 총회의 회의록 준비;
- (b) 연맹의 자금이 재정적으로 책임있게 관리되고 연맹이 전문적이고 도덕적인 업무 관행에 따라 운영되도록 감독; 그리고
- (c) 서기의 직책과 관련된 모든 의무와 때때로 이사회 혹은 회장이 지정하는 기타 의무를 수행.

6.06 임원의 보증. 임원은, 연맹 부담으로 이사회가 요구하는 담보로 해당 직책에 맞는 의무 수행을 위한 해당 금액의 보증을 제공한다.

6.07 무급. 연맹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급여 혹은 기타 어떠한 보상도 임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6.08 집행 위원장. 이사회는 연맹의 선임 위원인 집행 위원장을 유지한다. 집행 위원장은 이사회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한다. 집행 위원장은 연맹의 임원이 아니며 이사회 혹은 총회의 안건에 투표할 수 없다. 집행 위원장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상 혹은 기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 VII 조

총회

7.01 총회. 연맹은 2 년에 한 번씩 짝수 연도마다 회원 클럽 총회를 개최하는 바, 장소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총회 개최는 개최되기 최소 6 개월 이전에 공식으로 발표되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최소 90 일 이전에 클럽에 송부된다.

7.02 총회에서의 투표. 자격을 갖춘 각 양호 클럽은 대의원 (임명된 대의원의 부재 혹은 불능 시 이를 대신할 대의원도 함께)을 임명할 권리를 가지며, 임명된 대의원은 클럽의 회원으로서 소속 클럽을 대신하여 모든 투표를 수행한다. 대의원은 본인이 회원인 클럽만을 대표한다. 대의원을 통해 각 클럽, 연맹의 이전 회장, 리전 거버너, 연맹 이사회의 각 이사들은 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진 각 사안에 대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대리 투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7.03 정족수. 자격을 갖춘 양호 클럽 전체 중 최소 1/3 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모든 총회의 정족수를 형성한다. 출석 및 투표 인원 과반수의 투표가 회원들의 행위이다. 등록된 대의원 수가 양호 클럽 중 1/3 을 대표하는 대의원 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일반적 내용이 총회 개최 전에 알려진 사안들을 검토할 목적으로의 정족수는 자격 심사 위원회에 등록된 대의원들 중 참석한 대의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VIII 조

이사회

8.01 구성. 이사회는 각 선거 구역에서 한 명씩 및 기금조성위원회 (Fundraising Council)의 회장을 포함하여 열 네 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장 혹은 차기 회장이 자신의 임기를 채우기 위해 이사회에 남는다면 이사회는 열 여섯명까지 구성될 수 있다. 이사들은 선거가 이루어진 연도의 9 월 1일부터 시작하여 2 년동안 재임하게 되며 후임자가 선출되고 자격을 갖추게 될 때까지, 혹은 스스로 이사직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해질 때까지 이사직을 수행한다.

8.02 권한. 이사회는 연맹의 사업 및 업무를 이행, 관리 및 감독할 전적인 권한을 갖는다.

8.03 자격 및 선출. 연맹의 이사는 모두 성년의 자연인 (개인이어야 하며, 법인 혹은 기타 단체가 아님)이어야 한다. 클럽 회장을 역임한 정회원은 해당 선거 구역의 이사로 선출될 자격을 갖는다. 해당 회원은 리전 거버너가 되지 않을 것과 이사회 재직 기간 중 리전 혹은 클럽의 어떠한 선출 직책도 맡지 않을 것, 선출된 이사로서의 재임 기간과 이전의 이사회 재임 기간 사이에 최소 12 개월의 휴지기가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한다. 각 선거 구역 당 한 명의 이사가 선출된다.

8.04 선거 구역. 선거 구역은 다음과 같다:

- (a) 선거 구역 1: 브라질
- (b) 선거 구역 2: 캐나다 – 캐나다 동, 서부 리전들
- (c) 선거 구역 3: 일본 – 미나미 및 니시 리전들
- (d) 선거 구역 4: 일본 – 히가시 및 키타 리전들
- (e) 선거 구역 5: 한국 및 대만
- (f) 선거 구역 6: 남미 – 멕시코/중미 및 America del Sur 리전들
- (g) 선거 구역 7: 필리핀
- (h) 선거 구역 8: 일본 – 츄오 리전들

- (i) 선거 구역 9: Camino Real, Desert Coast 및 Golden West 리전들
- (j) 선거 구역 10: Founder, Sierra Nevada 및 Sierra Pacific 리전들
- (k) 선거 구역 11: 중서부, 중북부, 중남부 및 남부 리전들
- (l) 선거 구역 12: 북대서양, 북동부 및 남대서양 리전들
- (m) 선거 구역 13: 북서부 및 록키 산맥 리전들

새 리전이 형성된 경우, 이사회가 위 선거 구역 중 한 곳으로 배정한다.

각 선거 구역별로 한 명의 이사를 선출한다. 이사들은 순환 기반으로 선출되며 한 그룹만이 매년 선출된다. 일반적으로, 각 이사의 후임자는 2년 임기를 채우도록 선출되지만, 1년에 총 이사들 중 60% 이상이 혹은 40% 이하가 달리 선출되는 경우 이사들 숫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임기를 1년으로 줄일 수 있다.

8.05 지명. 각 선거 구역은 자체 지역을 대표할 이사를 아래에 설명된 대로 순환 기반으로 혹은 전체 회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이를 때때로 행사한다. 이러한 선택권은 해당 선거 구역 내 클럽 회원들이 변경하기로 투표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 (a) 전체 회원 중 선출. 선거 구역 내 어떤 클럽에서건 후보자를 제안할 수 있다.
- (b) 순환 기반으로 선출. 선거 구역이 두 개 이상의 리전 혹은 국가를 포함한 경우, 이사 후보를 제출할 리전 혹은 국가를 돌아가면서 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차례가 돌아온 내부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낼 수 있다. 순환제 이사 선출의 적용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경우 선거 구역 내 클럽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연맹의 이사회에 회부되고 연맹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매년 8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서기는 이사회를 위한 후보자 지명을 위하여, 그 해에 이사를 선택하는 선거 구역 내의 모든 클럽을 초대한다. 본부에 의해 후보자들의 자격이 심사되고, 이사회가 채택한 마감 기한과 절차에 따라 출마를 동의한 지명 후보자들의 규격화된 이력서가 완결된다.

8.06 선거. 본부는 해당 해에 선거구역의 내부에게 선거 자격이 있는 활성 클럽에게 우편 투표용지 및 각 후보의 표준화 된 이력서를 우송하여 제공한다. 투표를 실시하는 각 클럽은

한 명의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다. 다수의 투표를 확보한 후보는 해당 선거구역의 이사회로 선출된다.

8.07 사직. 연맹의 이사 혹은 임원은 언제든지 연맹의 회장 혹은 서기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사직할 수 있다. 사직은 통보를 받은 날짜 혹은 이에 달리 정한 날짜부터 유효하다. 사직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사직서가 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8.08 제적. 연맹의 이사 혹은 임원은 이사회가 연맹의 이익을 위해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제적하기로 결정하면 이사회에 의해 제적될 수 있다. 이러한 제적은 제적되는 개인의 계약 권리에 아무런 침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제적은 제적되는 당사자를 제외한 재직중 이사들의 2/3의 동의가 있는 후에만 또한, 이사회 회의에서 당사자에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 후에만 이루어진다.

8.09 공석. 이사회 이사 사직하거나, 제적 혹은 달리 임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 회장은 적절한 선거 구역으로 하여금 이사회가 승인한 절차에 따라 후임자를 지명할 것을 요청한다. 선출된 사람은 잔여 임기 동안 이사로 재임한다. 공석이 발생하고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에 이사회가 행동을 취한다는 사실이 이러한 행동 혹은 이사회 행동할 권한을 무효화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8.10 회의 장소. 이사회 회의는 연맹의 본부에서 개최되지만, 회장이나 이사회가 선정하는 지역으로서 펜실베이니아 내 혹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개최될 수도 있다.

8.11 정기 회의. 이사회 정기 회의는 매 회계 년도에 최소한 2 번씩 열리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열린다.

8.12 특별 회의. 이사회 특별 회의는 회장 혹은 두 명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 특별 회의는 전화, 이메일 혹은 전보의 경우 회의 개최일 최소 72 시간 이전, 우편의 경우 10 일 이전에 각 이사들에게 통보된다. 통보시에는 항상 회의의 시간과 장소가 명시된다.

전쟁 혹은 미국에 대한 공격, 핵 혹은 원자력 사고 등과 같은 비상시의 이사회 회의에 관한 통보는 당시 연락이 가능한 이사들에게만, 그리고 출판물 혹은 라디오 등과 같이 당시 연락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8.13 주의의 기준 및 정당화할 수 있는 신뢰.

- (a) 이사는 연맹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가지며 이사회 위원회 회원의 임무를 포함한 이사는 이사의 임무로써 연맹을 위하여 최선의 이익을 위하는 자세와

일반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문의, 기술 및 근면을 포함한 주의를 기울여 선의로 이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는 다음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를 통해 각기 작성되고 제시된 재무 제표, 기타 재무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 의견, 보고서 혹은 성명서 등을 선의로 신뢰할 수 있다:

- (i) 이사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합당한 신뢰성과 능력의 존재를 믿는 한 명 이상의 연맹 임원 혹은 직원;
- (ii)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혹은 기타 인사들 대상으로 이사가 해당 사안에 대한 해당인의 전문적 혹은 전문가적 능력을 합리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 (iii) 이사가 재직하지 않는 이사회 위원회로서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지정되고 해당 사안이 지정된 권한 내에 존재하며 이사의 합리적인 신뢰의 가치가 존재하는 위원회.

제공된 해당 사안 정보에 대한 이사의 신뢰가 부당한 지식으로 증명될 시 이사의 행위는 선의의 행동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 (b) 각자 지위에 따른 해당 의무 수행에 있어서, 이사회, 이사회 위원회 및 각 이사들은, 연맹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직원, 연맹이 사업을 영위하고 기타 관계를 맺고 있는 자, 연맹의 사무소 혹은 기타 연맹의 혹은 연맹과 관련 있는 사무소 또는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 및 기타 모든 관련 요소들을 대상으로 하여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은 본 8.13의 (a)항을 위반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 (c)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무의 위반, 선의가 결여되지 않거나 재단 자금의 사적 유용이 없을 때에는, 이사로서 취한 행동 혹은 취하지 않은 행동은 연맹의 최대 이익을 위한 행위로 가정된다.

8.14 정족수, 대행 방법 및 정회. 본 조항의 7.13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이사들중 과반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형성해야 한다. 각 이사는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참석하고 투표한 이사들 과반수가 찬성한 사항은 이사회 결정이 된다. 정족수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참석하고 투표한 이사들 과반수가 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회의를 연기하기로 때때로 결정할 수 있다. 이사들은 이사회 전체로서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개별 이사들은 그러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 회의에서 내려질 수 있는 결정이 다음과

같이 회의를 하지 않고 내려진 경우는 예외이다. 이와 같은 결정이, 재직 중인 모든 이사들이 동일 서류 혹은 복사본에 서명할 것을 만장 일치로 합의한 서면 확인서가 있으며 이것이 연맹의 서기를 통해 집행 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8.15 이해 상충 관계가 있는 이사 혹은 임원; 정족수. 다음의 경우, 연맹과 한 명 이상의 연맹 이사 혹은 연맹과 다른 연맹, 파트너 쉽, 단체 혹은 한 명 이상의 이사들이 이사 혹은 임원으로 재직중인 혹은 재정적 이해 관계를 가진 기타 조직 간의 계약 혹은 거래는 이와 같은 이유 혹은 해당 이사가 그러한 계약 혹은 거래를 승인하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해 상충 관계에 있는 이사(들)이 투표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거나 무효화될 수는 없다:

- (a) 관계 혹은 이해 관계와 관련된, 그리고 계약 혹은 거래와 관련된 주요 사실이 이사회에 공개되거나 알려지고, 이사회가 이해 상충 관계가 없는 이사들이 정족수에 못미치더라도 이들 이해 상충 관계가 없는 이사들의 과반수 투표로 해당 계약 혹은 거래를 선의로 승인한 경우; 혹은
- (b) 이사회가 인가, 승인 혹은 비준할 당시 해당 계약 혹은 거래가 연맹에 공정한 경우.

이해 상충 관계가 있는 이사들은 본 항에 명시된 거래 혹은 계약을 승인할 이사회 회의의 정족수를 결정할 때 포함될 수 있다.

8.16 요금. 이사회 혹은 이사회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 혹은 기타 이사로서의 업무 활동에 대해 어떠한 요금이나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다.

8.17 교육. 매년 9 월 1 일 이전에, 연맹은 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9 월 1 일에 이사회 이사가 될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야 한다. 세미나는 이사회적 적절한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제 IX 조 위원회

9.01 이사회 위원회. 이사회는 상임 위원회가 기타 임시 위원회들을 설립할 수 있다. 각 위원회는 한 명 이상의 이사회 전체로 구성되어야 한다. 모든 이사는 한 개 이상의 위원회를 위해 일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또한 예산 범위내에서 이사회 이사는 아니지만

이사회에 의해 선발된 한 명 이상의 Soroptomist 가 위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다. 이사회 의 각 위원회는 이사회 임의로 활동할 수 있다. 상임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a) 재무 위원회 - 연맹의 재무 사안을 검토한다. 서기는 이 위원회의 위원이며 이 위원회의 의장직을 역임할 수 있다.
- (b) 법률 및 재결 (裁決)위원회 - 국제 소롭티미스트 헌장, 본 정관, 연맹 절차, 결의안 등에 대한 개정안을 접수한다.

9.02 기금조성위원회 - 이 년의 임기 동안 재직하게 되는 다섯 명의 위원들이 우편에 의한 투표로 선출된다. 위원들은 이 년 임기의 직책을 연속적으로 두 번 이상 맡을 수 없다. 위원회는 자체 회장을 선출하며 회장은 직권상 이사회 이사로 겸무한다. 기금조성위원회는 SIA 이사회 아래에서 미주 국제 소롭티미스트의 프로그램들을 관리, 후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선물, 유산 등을 모금, 유치 및 관리하며 투자 기금의 특별 감독과 조정을 행한다.

어떤 위원회도 본 정관에 의해 혹은 1988 펜실베니아 비영리 단체법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된 권한이나 직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러한 권한과 직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사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는 있다.

제 X 조 회계 관련 사안들

10.01 회계 연도. 연맹의 회계 연도는 매년 9 월 1 일 시작한다.

10.02 회비. 각 클럽은 연맹에 각 회원당 연회비 U.S. \$52 을 (평생 회원 제외) 7 월 1 일까지의 회원수에 기초하여 7 월 1 일까지 납부한다. 각 클럽은 2001 년 7 월 1 일 이전에 평생회원으로 지정된 회원 1 인당 U.S. \$10 을 7 월 1 일까지의 평생 회원 수에 기초하여 7 월 1 일까지 납부한다. 평생 회원 연회비는 의무적 보험 및 잡지 구독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10.03 SI 회비. 각 클럽은 SI 이사회가 규정한 국제 소롭티미스트의 회비도 납부한다. 정확한 회비 금액은 국제 소롭티미스트이 각 회원이 지불하도록 연맹에 청구한 연회비를 이사회가 최적의 환율을 적용하여 영국 파운드화로 지정한 금액이다.

10.04 요금. 각 클럽은 이사회가 지정한 추가 요금을 연맹에 납부한다. (예, 신규 회원 요금, 연체료, 총회를 위한 회비, 구독료, 보험료, 라이선싱 요금). 이러한 요금의 금액과 납부 기한은 연맹 절차에 기술되며 클럽에 충분한 기한을 두고 공지된다.

10.05 회비와 요금의 조정. 총회를 위한 회비 및 기타 부과액의 금액과 납부 기한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사회는 경제적 상황 혹은 회비 납부가 클럽이나 회원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지 등에 대한 것 등을 고려하여 모든 회비를 임시로 인상, 인하 혹은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10.06 감사. 연맹의 장부는 외부 공인 회계 법인에 의해 이사회가 지시한 때에 감사를 받는다.

10.07 계약. 본 정관에서 달리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을 맺거나 이행 혹은 연맹을 대신하여 증서를 교부할 임원 혹은 대표자 승인은 이사회가 담당한다. 이와 같은 권한은 일반적일 수도 있고 특정 사안에 한정될 수도 있다.

제 XI 조 의회의 권한

본 정관 혹은 국제 소로티미스트 헌장에 의해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 모든 사안에 대한 의회 권한은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최신판에 명시된 규정이 적용된다.

제 XII 조 개정

12.01 개정 제안. 2/3 의 찬성이 있으면, 어떤 클럽이건, 리전 혹은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을 제안할 수 있다:

- (a) 연맹의 규정 개정;
- (b) 연맹의 본 정관 개정; 혹은
- (c) 프로그램 현안에 대한 행동 제안.

제안서는 반드시 해당 제안의 재정적 영향에 관한 설명도 포함해야 한다; 클럽 및 리전은 제안서를 총회가 열리는 연도 이전 해 9 월 1 일까지 연맹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의 법률

및 재결 위원회는 모든 제안서를 검토하며 각 제안서의 정신과 의도는 보존한 채 명확을 기하기 위해 제안서를 통합 혹은 편집할 수 있다. 연맹의 세금 혜택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연맹의 법률적 권한 범위 밖의 행위이거나, 연맹이 달성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제안서는 제안자에게 되돌아가고, 이 때 제안자는 이사회에 이를 재청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를 수락, 거절 혹은 위원회의 결정을 수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결정과 상관 없이, 제안자는 해당 제안을 총회에서 논의하고 우편 투표에 부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어떤 제안에건 정보 및 권고안을 첨부할 수 있다.

12.02 심의. 대의원들은 과반수 투표로 제안된 정관 개정과 총회 소집에 포함된 결의안을 개정할 수 있다. 신규 정관 개정과 총회 소집에 포함되지 않았던 결의안 심의는 총회의 같은 회기 중 미리 통보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대의원 3/4의 투표로 가능하다. 새 제안서들은 과반수 투표로 개정할 수 있다.

12.03 투표. 매년 총회가 끝난 후 90 일 이내에, 각 제안서 및 결의안의 원본 및 개정본을 명시한 우편 투표지가 총회 투표인단의 권고안, 법률 및 재결 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양호 클럽에게 우송된다. 투표 응지는 발송 이후 60 일 이내에 본부로 회신되어야 한다. 회신 및 투표한 사람의 2/3 가 있어야 해당 사안이 승인된다.

12.04 절차 개정. 연맹 절차에 대한 개정은 클럽, 리전 혹은 이사회가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다. 법률 및 재결 위원회가 차기 이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12.05 국가별/지방별 법률 준수. 이사회가 검토한 후, 본 정관은 각 국가 혹은 지방의 법률 준수를 위해 조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정은 연맹 혹은 국제 소롭티미스트의 목적 및 목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